목 차

1.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 01
2. 성폭력 '신고접수' 경찰관 행동요령 ····· 02
3. 성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 03
4. 불법촬영 사건 단계별 처리절차 ····· 04
5. 피해자 조사시 유의사항(2차피해 점검 체크리스트) 05
6. 성폭력 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 07
7. 성폭력 적용법률 ····· 08
8.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 ····· 10

성폭력사건 처리 절차

접수

신고전화

- **가해자 인상착의 확인·전파/증거확보 유의사항 안내**
  "옷을 갈아 입거나 샤워하지 마시고, 양치·목욕·대소변 등도 경찰관 도착지점까지 참아주세요"
- **13세 미만·장애인은 廳 여성범죄수사팀 출동 요청**

상담전화

해바리기 센터,
여성긴급전화 안내

현장출동 / 초동조치

지역경찰/여청수사팀

- **사안 경중 불문, 타 신고에 우선하여 출동**
  ※ 여청수사팀: '통신매체 음란'과 그 외 성폭력 사건 중 긴급성 현장성·중대성 등 고려해 **필요성 없으면 전화코칭 가능**
- **가·피해자 분리조치 /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
- **가해자 도주시 인상착의·도주로 전파, 순찰차 긴급배치·수색 등**
- **피해자**
  - 신상정보 유출 방지 및 인권보호 철저
  - 치료·증거채취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전담의료기관 등 후송
  - 즉시 조사받는 것을 원치 않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정 협의 후 귀가조치
  - 신변보호(임시숙소) 필요시 희망센터·1366등 연계
    ※ 숙박 가능일 : 임시숙소(5일), 1366(7일)

여성범죄 특별수사팀

13세 미만·장애인 사건 및
기타 署 보고 중요사건 출동

署 초동조치 확인·보완 조치

가해자 신병·사건서류 등 인수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조사
※ 수사팀 도착까지 지역관서장, 여청과장 현장 임장, 사건지휘

수사

여청수사팀

- **가해자는 수사팀 內 수사관 조사**
  피해자 : 전담조사관 조사 원칙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연계)
  - 연령·대상별 국선변호인·신뢰관계자 참여 등 규정 준수
  - 보복점죄 등 우려시 신변보호위원회 개최→신변보호

  ※ 긴급한 경우 先 조치 後 보고

여성범죄 특별수사팀

가해자는 수사팀 內
수사관 조사

피해자 : 해바라기센터 연계
조사/보복범죄 등 우려 시
신변보호 조치

유의사항

-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 예외적으로 피해자 동의시 남성 전담 조사관 조사 가능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동의)서 작성)**
- **19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는 必 진술녹화, 단 피해자 신원은 녹화하지 않고 서면 작성**
- **장애인**의 경우 전문가와 협조, **유형별 특성에 맞는 조사 실시**
  - 피해자 조사 횟수 최소화(가급적 1회)에 노력(추가피해 방지, 진술오염 방지)
  -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용어 사용 금지(조심하지 그랬어요?,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신고하죠? 등)

성폭력 '신고접수' 경찰관 행동요령

| 신고전화인 경우

- 신고접수 경찰관은 피해자가 대부분 급박한 상황에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유념,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신속·정확하게 신고 접수

- 신고자(피해자)의 의사·감정을 충분히 배려하는 태도로 신고자의 평정심 유지와 접수요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중요

- 신고접수 즉시 출동지령과 동시에 부상여부 등을 확인하여 119에 연락
  ※ 13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지방청 여청수사계에 즉시 연락, 출동 요청

- 범행직후인 경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물어 지령실 등에 전파

(긴급신고) 성폭력 직행·직후 또는 범인 도주 상황 등 긴급한 경우, 신고자(피해자) 피신 권유 등 안전 확보 후 가해자 흉기소지 등 파악

(비긴급신고) 과거에 발생한 피해신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 여경과 통화할 수 있음을 안내

* "많이 힘드셨을 텐데 경찰에 잘 신고해 주셨습니다. 경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등

※ 피해자는 피해 충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길 기대한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경찰조차도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

- 가정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의 연락처를 물어 직접 통화, 일시 보호를 요청

- 증거물 보존에 대한 안내 멘트

- "씻거나 속옷 등을 갈아입거나 청소를 하지 말고 현장 그대로 유지하기 바랍니다"
- "옷을 갈아 입었으면,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경찰관에게 주세요"
- "양치, 세수, 목욕이나 대소변도 경찰관이 갈 때까지 잠시만 참고 기다리세요"

- 관할이 아닌 경우라도 일단 접수 후 조치 및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가 아니라도 신고가능 ※ 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모두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성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 출동 과정 중 조치사항

- 피해 사실, 현재 상황, 피해자·가해자의 현재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 접수자로부터 파악 철저, 사안의 경중 불문 타 신고에 우선하여 출동
  ※ '통신매체 이용 음란'을 제외한 성폭력 범죄 신고접수 시 지체 없이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현장출동/다만, 긴급성·현장성·중대성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도 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현장출동 경찰관 코팅 가능

- 신속한 현장출동과 함께 과학수사팀·여청수사팀 등에 사전 연락, 소요시간 최대한 단축

- 이목 집중에 따른 피해자의 수치심을 감안,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광등 소등 및 인근하차 후 보도 이동 등 조치

| 현장 도착 시 조치사항

- 피해자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 치료*·증거채취 필요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치료에 관한 의료비 전액 지원
  ※ 특히, 아동·장애인 피해자는 반드시 해바라기센터 연계하여 상담·의료·조사를 병행 (가급적 부모 등 신뢰관계인 동행) / 원거리로 신속한 치료가 곤란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인계

- 피의자 도주시간을 감안하여, 필요 시 112상황실에 신속히 인상착의 및 도주로 등 전파하고 순찰차 긴급배치, 주변지역 수색
  ※ 현장주변에서 피의자 수색 시, 피해자를 즉시 구호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순찰차에 동승하여 수색가능

-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경찰관서로 동행할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동(같은 차량에 피의자·피해자 동승 금지)

-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사건인 경우 가해자 이외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연락, 필요시 지역 내 보호시설로 연계
  ※ 가해자 체포 시 아동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분리조치 후 체포

불법 촬영 사건 단계별 처리 절차

단 계	단계별 유의사항
신고접수	● **합동대응팀(여청·지역경찰)에 전파하여 신속 출동 조치** - 가해자의 특징 등 확인, 합동대응팀 신속 전파(즉시연락체계 구축) -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요청 - 불법촬영 외 다른 피재는 없는지 확인 -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지방청 여성범죄 특별수사팀 즉시 연락 ● **상담만 요구할 경우 통합지원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 **불법촬영자 검거 및 휴대폰 등 불법촬영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 압수** ※ 불법촬영자 검거시 피해자와 분리 조치 철저 ● **피해자 면담시 언행에 유의하고, 향후 진행절차 상세히 설명** ● **휴대폰 등 저장매체 및 웹하드·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 저장 여부 확인, 이메일·메신저 등도 점검하여 유포 여부 확인** ● **불법촬영물 유포 시 즉시 긴급삭제·차단 요청** ※ 방통위 : 02-3219-5172,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피해자가 즉시 조사받는 것을 원치 않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절차 안내 후 귀가 조치** ※ 간이진술서 적극활용
불법촬영 수사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절차 준수** - 여경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가명조서 및 국선변호인 등 지원제도 적극 활용 - 진술녹화·전문가 참여 등 조사 절차 준수 ※진술녹화(19세미만·장애인) / 전문가 참여(13세미만·장애인) 신뢰관계인 동석 / 법률조력인 참여 등 ● **여죄·유포 여부 수사 위해 압수한 휴대폰·노트북 등 복원의뢰** - 필요 시 피의자 주거지 등 적극 압수수색 - 복원결과로 확인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엄정수사 ● **주요 범행 장소 확인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확행**
피해자 보호지원	● **해바라기 센터·전문상담기관 등 통해 상담·치료 연계** ●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 핫라인 구축 보호시설 인계 /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등 보호조치**

피해자 조사시 유의사항
(2차피해 점검 체크리스트)

● 피해자 조사 時 유의사항(16개)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발췌

구 분	유의 사항
가해자 정보수집	**1.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에 대한 질문 금지**
	가해자 특정을 위해 관계 확인 필요 時 중립적 질문 사용 (예: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의심 금지
	"사귀는 사이 아닌가요? 호감을 느낀 거 아닌가요?" 가는 질문 금지
과도한 피해사실 확인	**3. 피해사상황에 대한 시범 및 재연 요구 금지**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 활용
	4. 피해 과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문 금지
	사정·삽입행위 지속 정도 등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질문임
	5. 피해자의 느낌 등을 묻는 질문 時
	폭행·협박, 위계·위력 판단을 위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확인해야 할 때는 '느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라고 질문
구성요건 확인	**6. 피해자의 반항정도와 구조요청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금지**
	상황 확인 필요 時 개방형 질문 사용 ("그 사항을 더 자세히 진술해주세요. 그 때 당신의 행동을 설명해주세요")
	7. 성폭력 당시 술·약물 사용에 관한 질문 필요 時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질문의 목적·이유를 사전에 설명
	8.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는 질문 금지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질문 (예: 가해자가~라고 하는데, 아닌가요?<X>/~설명해주세요<O>)
	9. 반복적인 질문 時
	추가 확인을 위해 반복질문할 때는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질문 형태를 사용
비난·공격성 질문	**10. 지연 신고에 대한 비난 금지**
	지연신고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의심해서는 안됨/다만,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허위고소·무고 가능성 조사 필요 時 공판진술의 신빙선을 높이기 위해 지연 신고 이유 조사 필요함을 설명
	11.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관의 불신으로 인한 경우→라포 형성 재시도 / 진술 방법을 모르는 경우→진술 규칙 재설명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OO씨 뿐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2. 패해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표현 금지
	모순되고 불일치한 진술 時 즉시 지적하기보다는 조사 종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13. 피해자의 성적 행위(성경험,성적 이력)를 묻는 질문 원칙적 금지
	제3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체적 증거가 있는 등 불가피하게 질문 필요 時 질문의 목적·이유 설명
	14. 겁을 주거나 공격적인 질문 금지
	"그렇게 애매하게 진술하면 무고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등 발언 금지
부적절·잘못된 용어 사용	**15.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언행 금지**
	가해자 편을 드는 듯한 말,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질문 금지 (예: 남자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겠는가? 왜 그 시간까지 술을 마셨나? 왜 집에 남자를 들였어요?)
	16. 잘못된 용어 사용 금지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의학적 용어(음경,질,항문 등) 사용 / 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성기의 결합으로만 인식하는 용어(성관계,성교,성행위 등) 사용 금지 / 수사·법률적 용어는 쉽게 설명

● 신고접수·현장출동 단계 (7개)

구 분	유의 사항
사건 처리 미흡	1. 사건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 종결
	2. 신고 미접수 / 관할·기능을 이유로 사건 떠넘기기
	3. 가·피해자 분리 소홀
	4. 피해자 처벌의지 부족에 따른 미온적 대응
부적절 언행	5. 피해를 경미하게 취급, 섣부른 판단으로 미온적 대응
	6. 가해자 신병에 대해 피해자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행·조치
	7. 기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언행·태도

●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관련 (22개)

단 계	구 분	내 용	고지·검토	시 행
조사 前	사전 보호조치	1. 법 신변보호 (대상: 보복 우려 있는 범죄 피해자)		
		2. 지침 해바라기센터 연계 (의무: 13세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3. 지침 심리상담 지원 여부 (피해자 케어 요원 투입)		
		4. 지침 약물 이용 성범죄 의심 時, 피해자 증상을 면밀히 파악 후 감정 의뢰 절차 진행 (先 감정, 後 이송)		
조사	조사기법 및 권리·지원	5. 지침 변호인 선임(국선변호인 선정 요청) 권리 고지		
		6. 법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 미성년인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3~9조 피해자 / 아동학대특례법 제5·6조 피해자)		
		7. 법 진술녹화 (의무: 19세미만, 장애인, 심신미약자)		
		8. 법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 13세미만, 장애인 ※수사지장 초래우려 등 부득이한 경우 外)		
		9. 지침 가명조서 적극활용		
		10. 지침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 제시·설명		
		11. 지침 여성조사관 조사 (원칙: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12. 지침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활용		
		13. 지침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		
		14. 지침 가급적 1회 조사 실시		
		15. 지침 대질조사 지양		
		16. 법 진술분석전문가 활용 (의무: 13세미만, 장애인)		
		17. 법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 13세미만, 장애인 ※참여고지→의무, 참여→임의)		
사후 지원	제도안내	18. 지침 성폭력상담소 상담·재판동행서비스 등 지원사항 안내		
	시설안내	19. 지침 쉼터 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연계		
	모니터링	20. 지침 지원 연계 미요청 이후에도 지원요청 의사 모니터링		
언론 대응	2차피해	21. 지침 언론공개 내용의 2차 피해 유발 가능성 검토		
		22. 지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대응 필요성 검토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확인사항

피해자 조사 관련

● **장애인·아동(13세미만, 생일기준) 피해자**
- 전문가 의견조회 (의무, 성폭력처벌법33조)
- 영상녹화 (의무, 성폭력처벌법 30조)
-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 성폭력처벌법 34조)
- 진술조력인 참여 (재량, 단 신청권 고지는 의무, 성폭력처벌법 36조, 2013. 12. 19. 시행)

● **19세미만 피해자(생일불문 연나이)**
- 영상녹화 (의무, 청소년성보호법 26조)
-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 청소년성보호법 28조)

● **성폭력처벌법 3,4,5,6,7,8,10,15조 범죄 피해자**
-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 성폭력처벌법 34조)

● **모든 피해자(성인 포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성폭력처벌법27조)

※반드시 국선변호사 신청권 고지, 신청서를 해당지검 사건과·피해자 지원과(야간은 당직실)로 팩스 송부

※구속영장 신청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 국선변호사 참석하도록 변호사에게 연락(성폭력범죄사건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영상녹화시 피해자 신원 관련사항 진술 피할 것 (성폭력처벌법2조) - 재판 중에 영상녹화물 재생시, 피해자 신원노출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서면 작성

★신뢰관계자 동석 시 주의사항

※신뢰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영상물의 증거 능력 인정되므로 반드시 동석 (피해자가 재판출석 피할 수 있음)

※신뢰관계자의 조사실 이탈시에는 조사 중단 (이탈 중 피해자 진술에 관여하는 신뢰관계자 증언 통한 증거능력 부여 불가)

피의자 조사 관련

● **수사개시보고 등**
- 13세미만, 장애인 대상 범죄, 기타 중대한 사건
-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경우→보호관찰관에게 즉시 통보

● **조사 시 주의 사항**
- 13세미만, 19세미만, 장애인에 대한 범죄
  ☞ 피의자의 위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 조사
- 피의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
  ☞ 피의자 및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및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등을 확인

※삭제된 경우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 구증

- 진술분석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적극 활용
- 피의자 신문조서(피해자 진술조서 포함) 작성시 자의적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기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 **해바라기센터(24시간)와 연계(☎1899-3075)**
- 병원에 설치된 센터에서 수사 및 의료·상담·법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의료지원

● **여성긴급전화(24시간/☎1366)**
- 24시간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및 관련 기관 연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범죄피해자 경제적·의료적 지원

● **신변보호조치 절차 안내**
- 대상자 주소지(현재지)관할 경찰서에 신청

성폭력 적용법률

● 피해자 연령 및 행위별 적용법률

★성폭력 범죄 모두 비친고죄

<table>
<tr><th>구 분</th><th>13세 미만</th><th>연19세 미만</th><th colspan="2">연19세 이상</th></tr>
<tr><td>강간</td><td>성폭력처벌법
제7조 ①</td><td>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①</td><td colspan="2">형법 제297조</td></tr>
<tr><td>유사강간</td><td>성폭력처벌법
제7조 ②</td><td>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②</td><td colspan="2">형법 제297조 의 2</td></tr>
<tr><td>강제추행</td><td>성폭력처벌법
제7조 ③</td><td>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③</td><td colspan="2">형법 제298조</td></tr>
<tr><td rowspan="3">위계·위력에
의한 간음</td><td rowspan="3">성폭력처벌법
제7조 ⑤</td><td rowspan="3">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⑤</td><td>만19세 미만
/ 심신미약자</td><td>만19세 이상</td></tr>
<tr><td>형법 제302조</td><td>업무고용관계 : 형법 제303조 ①
법률상 구금된 자(위계·위력 불요)
: 형법 제303조 ②</td></tr>
<tr><td colspan="2">위 경우 아니면 성폭력 범죄 불성립</td></tr>
<tr><td rowspan="2">위계·위력에
의한 추행</td><td rowspan="2">성폭력처벌법
제7조 ⑤</td><td rowspan="2">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⑤</td><td>만19세 미만
/ 심신미약자</td><td>만19세 이상</td></tr>
<tr><td>형법 제302조</td><td>업무·고용관계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①</td></tr>
<tr><td rowspan="2">동의하에
간음·추행</td><td>형법 제305조/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td><td>장애인 청소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td><td colspan="2" rowspan="2">성폭력 범죄 불성립</td></tr>
<tr><td>☆무조건 처벌</td><td>위 경우 아니면
성폭력 범죄 불성립</td></tr>
<tr><td>궁박 상태
간음·추행</td><td>형법
제305조</td><td>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2
(13세 이상
16세 미만)</td><td colspan="2">성폭력 범죄 불성립</td></tr>
</table>

● 기타 성범죄 행위유형별 적용법률

죄 명	적용 법조	법정형	비 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긴급체포 불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가중처벌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보호법 제11조	무기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한 조항에 여러 행위가 규정된 경우는 중한 형을 기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무기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or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제14조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제15조	7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	청소년보호법 제16조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의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3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가정폭력 사건처리 흐름도

가정폭력 사건발생

경 찰

현장출입조사

응급조치

①폭력행위 제지·분리조사
②상담소·보호시설 인도
③의료기관 인도
④임시조치신청 가능 통보

긴급임시조치

①퇴거 등 격리
②100m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신청

①~③긴급임시조치와 동일
④의료기관 위탁
⑤유치장, 구치소 유치

검 찰

불기소처분 | **가정보호사건** | **기소** | **임시조치청구**

법 원

보호처분 | **판결** | **임시조치결정**

① 접근행위제한
② 전기통신제한
③ 친권행사제한
④ 사회봉사 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보호시설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 치료위탁
⑧ 상담소 상담위탁

현장출동경찰관 조치사항

현장출입·조사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상태·안전여부 조사

★필수교부서류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모든신고)
※PDA상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되므로 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교부

현장출입·조사 방해 시(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고에도 지속 방해 시
강제 출입 후 피해상태 확인 및 과태료 통보절차 진행

★작성서류
현장조사 방해 행위자 통보서(경찰서 담당자에 송부)

응급조치

① 폭력행위 제지·분리조사
②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③ 치료기관 인도
④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작성서류
위험성조사표(모든 신고), 응급조치보고서(사건진행시)

긴급임시조치(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 직권으로 결정)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①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직장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작성서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편철), 통보서(가해자), 결정서(KICS)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과태료 300만원↓)

★작성서류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법원 FAX통보)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은 원치 않고 접근금지만을 원하는 경우는?

A.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입건이 전제**
형사처벌 받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후
임시조치 신청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안내